

한 국 농 어 촌 공 사 및
농 지 관 리 기 금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10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지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('21.8.30.)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담보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(안 시행규칙 제19조의9 개정)

-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한 기존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15~30% 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 가입 허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9제2호 중 “것”을 “것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지급방식으로 받은 자금으로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의 전부를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9(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)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(이하 “담보농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제19조의9(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<단서 신설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것. 다만,</u> <u>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</u> <u>의 지급방식으로 받은 자금으</u> <u>로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의</u> <u>전부를 일시상환하기로 약정</u> <u>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</u> <u>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</u> <u>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</u> <u>격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2